교육업적 평가 시행지침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업적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의과대학 교육 인사내규 별첨 3. 교육업적 평가 항목 및 배정 점수에 있어서 타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한 배정 점수에 관한 것은 이 지침에 의한다.

제3조 (교육업적의 평가시기) 교육업적의 평가는 서류 제출일 전에 시행된 업적에 근거하여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한다.

제4조 (교육업적 평가항목 당 배정 점수)

1. 의학교육관련 위원회: 교육과정위원회, 교육과정 소위원회, 졸업 및 국가고시위원회 등으로 한다.

※ 의학교육관련 위원회 관련 배정 점수 평가 : 위원장이 인정하는 합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 활동 연간 출석이 50%가 안 되는 경우 점수로 인정하지 않는다. [신설 2020년 9월 8일].

2. 기타 학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운영관련활동 참여: 학생인턴과정 참여, 임상수기 항목별 담당교수 등을 포함하며 배정 점수는 5점으로 한다.

3. 교육관련 연수의 참여: 단순 참여는 5점으로 하며 강사는 10점으로 한다. 연수의 참여는 50% 이상 참여한 경우에 인정하며 동일한 연수를 2일 이상 시행한 경우에도 5점으로 인정한다. 단,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1일 5점으로 할 수 있다.

4. 기타 학장이 인정하는 교육 참여

가. 의학과4학년 소그룹 및 1:1 지도, 의예과 1학년 기독 입문 및 성서와 의학 과정의 소그룹 지도, 의학과 4학년 임상수기 지도교수를 포함하며 배정 점수는 10점으로 한다.

나. 보건대학원 과정책임 교수는 과정 수업 2/3 이상 수행한 경우에 10점을 배정한다.

다. 임상종합평가 감독관은 감독 1교시 당 1점으로 한다.

5. 교육자료개발

가. OSCE/CPX, PBL 모듈 개발은 새로운 문항 및 모듈을 개발한 경우 교육학교

실, 교수학습지원실장 또는 임상교육지원실장 심의 후 10점을 인정하며 그 외 5점으로 한다.

나. CBT의 개발은 새로운 문항으로 전국단위 평가 문항으로 채택된 경우 10점으로 한다.

다. e-learning 컨텐츠의 경우 의과대학 이러닝 컨소시움에 채택되는 경우 10점으로 한다.

라. CBL 개발, WBI, 기타 IT 교육 자료의 개발은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5~10점으로 한다.

마. 각 교육자료의 개발은 매년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.

부 칙

1. 이 시행지침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된 시행지침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.